

# 서울특별시 마포구 보행권 확보 및 보행환경 개선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

2019. 9. 26.  
행정건설위원회

## 1. 심사경과

- 가. 제안일자 및 제안자 : 2019.9.17. 이민석 의원 외 8명
- 나. 회부일자 : 2019.9.17.
- 다. 상정일자 : 제233회 임시회 제4차 행정건설위원회 (2019.9.26.)  
상정, 심사, 의결

## 2. 제안설명요지 【제안설명자 : 이민석 의원】

### 가. 제안이유

서울특별시 마포구민의 보행권 확보와 안전하고 쾌적한 보행환경을 조성하여 구민의 삶의 질 향상을 목적으로 하는 것임.

### 나. 주요내용

- 용의의 정의(안 제2조)
- 보행환경 개선사업 추진(안 제5조)
- 쾌적한 보행공간 확대(안 제6조)
- 보행약자를 위한 보행여건 개선(안 제7조)
- 보행환경시설 점검 및 유지관리(안 제9조)
- 보행자 안전시설 설치(안 제10조)

### 3. 검토보고(전문위원 유준상)

○ 본 제정조례안은 이민석 의원 외 8인에 의해 발의되어 행정건설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으로 서울특별시 마포구민의 보행권 확보와 안전하고 쾌적한 보행환경을 조성하여 구민의 삶의 질 향상을 목적으로 하는 것으로 총 12개의 조문과 부칙으로 구성되어 있음.

#### ○ 주요내용을 살펴보면

- 안 제3조에는 보행약자를 포함한 모든 보행자들이 걷고 쉽고 편한 도시로 만들기 위한 구청장의 책무를 규정함.
- 안 제4조에는 구민은 안전하고 쾌적한 보행환경에서 생활 할 권리 및 시책수립과 추진에 관한 알권리와 구민의 협력사항 명시함.
- 안 제5조에는 횡단보도, 신호기 및 안전표지, 어린이 통학로 개선 등 보행환경 개선사업 추진을 위한 사항을 명시함
- 안 제6조에는 쾌적한 보행 공간 확대를 위하여 보행자의 통행과 활동이 많은 도로를 대상으로 조정 및 개선 사업을 명시함.
- 안 제7조에는 보행약자를 위한 보행여건을 개선하도록 명시함.
- 안 제8조에는 블라드 설치 및 관리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원활하고 편리한 통행과 활동이 가능하도록 규정함.
- 안 제10조에는 사업시행자 등이 보행자의 안전을 위한 시설물 설치 의무사항을 규정함.

#### ○ 검토의견으로는

본 제정조례안은 서울 16곳 자치단체에서 조례로 제정하여 시행중이며, 차량 증가에 따른 도로의 불법주차, 도로 및 보도 위의 무단적치물, 각종 정비사업으로 인한 장기적인 도로점용 상태의 지속 등으로 도심속 보행 공간은 날로 혼잡해 짐에 따라 주민의 보행권을 확보하고 안전하고 쾌적한 보행환경 조성을 목적으로 하는 조례 제정은 타당하다고 사료됨.

- 현재 마포구가 도심 속 띠녹지사업을 활발히 전개하고 있는 시점에 발맞춰 본 조례 제정은 주민의 보행권과 보행환경이 개선에 원동력이 될 것으로 기대되며, 향후 정책의 방향이 자동차 중심에서 사람중심으로 전환하는 계기가 되도록 시책사업 추진 시 각별히 신경을 써야 할 것으로 사료됨.

4. 질의 및 답변요지 : 생략

5. 토론요지 : 없음

6. 심사결과 : 수정가결

7. 기타 소수의견의 요지 : 없음

8. 기타 : 없음

# 서울특별시 마포구 보행권 확보 및 보행환경 개선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

의안 번호	19-137 관련
----------	--------------

발의년월일 : 2019. 9.

발 의 자 : 김종선 의원 외 1명

## 1. 수정이유

용어를 통일하기 위하여 일부 조항을 다음과 같이 수정하고자 함.

## 2. 주요내용

제5조제1항 “차도와 인도” 를 “차도와 보도” 로 하고,

제5조제2항 “인도위에” 를 “보도위에” 로 하고,

제5조제3항 “차도·인도” 를 “차도·보도” 로 하고,

제7조제2호 “인도의 턱과” 를 “보도의 턱과” 로 한다.

## 서울특별시 마포구 보행권 확보 및 보행환경 개선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

서울특별시 마포구 보행권 확보 및 보행환경 개선에 관한 조례안 일부를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.

제5조제1항 “차도와 인도” 를 “차도와 보도” 로 하고,

제5조제2항 “인도위에” 를 “보도위에” 로 하고,

제5조제3항 “차도·인도” 를 “차도·보도” 로 하고,

제7조제2호 “인도의 턱과” 를 “보도의 턱과” 로 한다.

### 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## 신 · 구조문대비표

제 정 안	수 정 안
제5조(보행환경 개선사업 추진)	제5조(보행환경 개선사업 추진)
_____	_____
_____	_____
_____	_____
_____	_____
_____	_____
_____	_____
1. _____	1. _____
_____	_____
_____	_____
인도의 턱 _____	보도의 턱 _____
2. 인도위에 _____	2. 보도위에 _____
_____	_____
_____	_____
3. 차도·인도에 _____	3. 차도·보도에 _____
_____	_____
_____	_____
4. (생 략)	4. (생 략)
5. (생 략)	5. (생 략)
제7조(보행약자를 위한 보행여건 개선) 구청장은 보행약자들의 통행과 활동에 지장이 없도록 다음 각	제7조(보행약자를 위한 보행여건 개선) 구청장은 보행약자들의 통행과 활동에 지장이 없도록 다음 각

제 정 안	수 정 안
<p>호에 따라 보행여건을 개선한다.</p> <p>1. ( 생 략 )</p> <p>2. _____</p> <p>_____ 인도의 턱과 _____</p> <p>_____</p> <p>_____</p> <p>3. ( 생 략 )</p>	<p>호에 따라 보행여건을 개선한다.</p> <p>1. ( 생 략 )</p> <p>2. _____</p> <p>_____ 보도의 턱과 _____</p> <p>_____</p> <p>_____</p> <p>3. ( 생 략 )</p>